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1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노인보호 관련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상담·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위탁기간 : 2018.9.~2023.8.(5년)
- 운영인력 : 8명 (기관장 1명, 상담원 7명)
- 위탁사무
 - 노인학대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사례조치, 사후관리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
- 관할구역 : 종로구·중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 등 8개 자치구
- '18년(하반기) 예산액 : 162,000천원 (국비 81,000천원 / 시비 81,000천원)

나. 민간위탁 추진경위

- '18.1.4. :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비 변경내시 통보
(1개 기관 추가 운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③항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①항

라. 민간위탁 추진필요성

-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 부담 등 가족간의 갈등으로 어르신 학대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 학대피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③항 :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①항 : 법 제39조의 5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변경내시액 추경 편성 요청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비고
	남부	북부	
운영체	(재)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사)참누리	
소재지	서초구	강북구	
운영인력	9명 (기관장1, 상담원8)	9명 (기관장1, 상담원8)	
관할구역	13개 자치구(강남지역)	12개 자치구(강북지역)	
개소년월	2004. 12.	2011. 7.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한 어르신 학대 문제 상담 및 가해 행위 신고접수• 학대받는 어르신 발견 시 학대사례 관여하여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 의뢰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의뢰하여 사건 마무리 및 사후관리• 어르신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 임승현 (☎2133 - 7415)